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3.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3월 10일

나. 발 의 자: 이규선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2025년 3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3. 2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규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류의 용어 사용의 긍정적 표현을 지양하고,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업자등에 대한 권고(안 제6조)
- 영업자등에 대한 권고(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지난 '24년 1월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

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신설되며 올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79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업계가 업소명, 제품명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본 제정 조례안은 이러한 정책 기초 하에 식품명에 무분별한 마약 관련 용어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및 권고 이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책무와 같은 조례 전체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계획 및 실태조사 규정, 안 제6조는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개선사업, 지원, 협력체계에 대한 규정을 두어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서 영업자 등이 마약류 등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안 제6조에서는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안 제8조에서는 개선을 위해 메뉴판 등 표시 변경으로 발생할 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검토 결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마약류 남용 예방 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 개선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함.

-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규정 신설('24.1.2.)로 인해 구청장의 권고 및 지원 규정의 근거가 상위법에 존재하므로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마약류 용어 사용을 지양하는 개선 사업은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이미 마약류 등의 용어로 표시·광고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피해가 없도록 재원 마련 확보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서울시 영등포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는 “상품명”, 본 조례안은 “식품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세부적 업무 추진을 위해 소관부서도 각각 구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2
----------	-----

발의연월일: 2025. 3. .

발의자: 이규선, 정선희, 유승용,
신흥식, 이성수, 이순우,
남완현 의원(7인)

1. 제안이유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류의 용어 사용의 긍정적 표현을 지양하고,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안 제6조)

나. 지원(안 제8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

제7조(개선사업) ① 구청장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2.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메뉴판, 간판, 제품 포장제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식품 등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